

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3] <신설 2022. 12. 30.>

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
호	소호			
2710	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 한정한다], 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		
2710	1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 한정하며,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은 제외한다]		
2710	12	경질유(輕質油)와 조제품  4. 나프타  5. 엔·지·엘(NGL)		0.5%  0.5%
2710	20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		

	<p>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][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은 제외한다]</p> <p>1. 경질유(輕質油)와 조제품</p> <p>라. 나프타</p> <p>마. 엔·지·엘(NGL)</p>		<p>0.5%</p> <p>0.5%</p>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